

# 체외두뇌 권리 협약 (한국어)

Covention on the Rights of Extracorporeal Brains

### 전문

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끝없는 발전 속에서 체외두뇌 기술의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였으며, 생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에 인류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,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그 권리가 어떠한 기술적 진보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명심하며, 체외두뇌 기술의 발전과 인권 보장의 균형을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연합은 인간과 그 권리에 관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확립하는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 1장

1조

- ① 체외두뇌는 인간으로 취급하며, 인간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.
- ② 인간으로 인정되는 체외두뇌의 범위는 그 정의에 따라 정한다.
- ③ 협약에 위배되는 체외두뇌는 권리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2조

① 체외두뇌의 국가기관 또는 WADN 인증기관에서만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.

## 제 2장 - 체외두뇌의 범위

1조

- ① WADN 인증기관에서 집도하여 온전한 대뇌를 가졌을 경우에만 체외두뇌로 인정한다.
- ② 인증기관은 국가기관이나 WADN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으로 정한다.

2조

- ① 인증기관에서 집도하지 않은 두뇌의 경우, 온전한 대뇌를 가지고 인증기관의 면밀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체외두뇌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② 인증기관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, 부적합 체외두뇌의 관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.

3조

- ① 적법한 기관에서 집도된 두뇌의 경우라도 적법한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체외두뇌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② 인증기관의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고 인증시설로 이동하였을 시에는 체외두뇌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인증기관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나 인증 시설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, 부적합 체외두뇌의 관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.

4조

- ① 부적합 체외두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비사망자 체외두뇌의 경우에는 인간으로 복원 후

해당 국가의 관련 법 또는 조약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.

5조

- ① 체외두뇌는 인간으로 취급하며, 인간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.
- ② 인간으로 인정되는 체외두뇌의 범위는 그 정의에 따라 정하다.
- ③ 협약에 위배되는 체외두뇌는 권리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#### 제 3장 - 체외두뇌의 분류

1조

- ① 체외두뇌는 사망자와 비사망자로 구분한다.
- ② 사망자 체외두뇌와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같은 권리를 갖는다.

2조

- ①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대상자의 자의적인 서약이 있어야만 체외두뇌로 집도될 수 있다.
- ②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.
- ③ 기존에 보관하던 시설에서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시설으로 이전하여 복원한다.

3조

- ① 사망자 체외두뇌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집도할 수 있다.
- ② 사망자를 체외두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전 전환자의 전환 서약이 있어야 한다.
- ③ 사망자는 인간으로 복원할 수 없다. 사망자의 불법적인 복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체외두뇌에는 전환 과정 중에 복원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

4조

1

# 제 4장 - 부적합 체외두뇌

1조

- ① 체외두뇌로 전환할 수 없거나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체외두뇌는 부적합 체외두뇌로 분류한다.
- ② 부적합 체외두뇌는 그 분류에 따라 처리한다.

2조

- ① 인증 기관에서 전환하였으나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1형 부적합 체외두뇌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2형 부적합 체외두뇌로 분류한다.
- ② 1형 부적합 체외두뇌는 인증기관의 부적합 부위 재건 수술을 거친 후 전용 시설로 옮겨져 1년간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일반적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.

- ③ 전용 시설에서 1년간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, 안락사 조치한다. 이때 대상 체외두뇌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.
- ④ 2형 부적합 체외두뇌는 안락사 조치한다.
- ⑤ 전환자의 안락사 조치가 취해졌고 원인이 집도의의 과실인 경우, 집도의는 과실치사로 입건하며, 집도기관은 5년간 인증기관 지정 해제한다.

3조

- ① 인증 기관에서 전환하였으나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망자 체외두뇌는 생명 유지장치가 장착중일 경우 안락사 조치하며, 인간의 신체로 복원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한다.
- ② 전환자의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집도의의 과실인 경우, 집도의의 집도의 자격을 박탈하고, 집도기관은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.

4조

- ① 인증기관에서 전환하지 않은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안락사 조치한다.
- ② 인증기관에서 전환하지 않았으나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특수 시설으로 이전되어 생활하도록 한다.

4조

① 인증기관에서 전환하지 않은 사망자 체외두뇌는 폐기한다.

5조

① 사망자 체외두뇌였으나 인간으로 복원한 경우 부적합 체외두뇌로 분류하며,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형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한다.

#### World Alliance of Democratic Nations



Andora · Australia · Austria · Belgium · Brazil · Canada · Chile · Colombia · Czech Republic · Denmark · Egypt · Estonia · Finland · France · Germany · Greece · Hungary · Iceland · Ireland · India · Indonesia · Italy · Japan · Jordan · Kuwait · Latvia · Liberia · Lithuania · Luxembourg · Malaysia · Mexico · Monaco · Netherlands · New Zealand · Norway · Pakistan · Philippines · Poland · Portugal · Qatar · Republic of Korea · Romania · Saudi Arabia · Singapore · Spain · Sweden · Switzerland · Taiwan · Thailand · Turkey · Ukraine · United Arab Emirates · United Kingdom · United States